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 및
개선명령 등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22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0832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 및 개선명령 등 (안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	3
나.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안 제20조의2 신설)	15

I.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0832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2. 21.

다. 회 부 일 : 2025. 2.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6조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의무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점검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은 유지관리보다 강화된 점검 제도로써 건축물 등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건축물등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축물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성능점검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성능점검 후 점검기록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규정만 있고,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성능점검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한편,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

의 기계설비가 안전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시의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2 신설, 제28조, 제30조).

3. 검토의견

가.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 및 개선명령 등 (안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16조(기계설비 <u>유지관리기준의 고시</u>)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u><신설></u> ② (생략)	제16조(기계설비 <u>유지관리</u>) ① ----- ----- -----제17조에 따른 <u>성능점검을</u> -----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하 “유지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u>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7조(기계설비 <u>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u>)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u>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u>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제17조(기계설비 <u>성능점검</u>) <삭제>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 -----

현행	개정안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u> <신 설> <신 설> <신 설>	----- -----. ② -----제1항에----- -----그 점검기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계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방

현행	개정안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신설></u> 2. ~ 4. (생략)	<u>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제28조(벌칙)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2. ~ 4. (현행과 같음)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u>제17조제1항에</u>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u>제17조제2항에</u>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u>제17조제3항에</u>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u><신설></u> 4. (생략)	제30조(과태료) ① ----- -----. 1. <u>제16조제2항</u> ----- ----- 2. <u>제17조제1항</u> ----- ----- 3. <u>제17조제2항</u> ----- ----- <u>3의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이행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u> 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현행	개정안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 ----- ----- -----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현행법상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별도의 조에 구분하여 규정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등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관리주체로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는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²⁾를, ‘성능점검’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³⁾하는 것을 의미함.

1) 「기계설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기계설비법」

제1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 (생략)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생략)

-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유지관리와 성능 점검의 수행 방식을 살펴보면,

유지관리는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를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⁴⁾한 후 각 기계설비별로 전체적인 적합 여부(적합: ○, 조치필요: ×)와 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사유를 표기·기록하고,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예시 】

냉동기 유지관리 점검표									
(2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 일	주 간	월 간	분 기	반 기			
1. 외관	-온도 및 압력계 상태								
	-윤활유 이상 유무 상태								
	-보온, 보냉재 탈락, 파손, 부식 상태								
2. 운전	-제어시스템 연동 상태								
	-밸브 개폐 상태(헤더포함)								
	-누수, 누유, 진공 상태								
	-소음, 진동 상태								

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4)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해야 한다.

	-냉온수, 냉각수 입·출구 온도 상태							
	-배관 차압 상태							
	-배기가스 온도 상태							
	-연료 사용량, 공급 압력 상태							
	-전압 및 전류계 상태							
3. 안전	-냉수동결 온도 상태							
	-오일온도 상태							
	-베어링 온도 상태							
작 성 방 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현장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u>점검결과에는 [적합 ○, 조치필요 X, 해당없음 /]을 표기</u>하고, <u>비고에는 조치필요 사유를 기록</u>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현장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4. 압축식 냉동기, 흡수식 냉동기, 냉온수기, 공랭식 냉동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자료: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지 제2호서식]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성능점검은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상태,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등과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등을 검토⁵⁾하여, 각 기계설비의 점검항목별

5)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11조(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유지관리 결과 및 **별표 3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 건축물등 별로 영 별표 7 제2호 가목에 따른 기술인력 1명, 나목에 따른 기술인력 1명을 고용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해당 연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설비의 점검항목에 대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에 검사 또는 점검 대상이 되는 설비의 종류, 검사 항목 및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적합 여부, 미흡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필요사항, 장비를 사용한 측정 사진 및 측정데이터 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예시 】

냉동기 성능점검표				
(2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기내압력 점검			
	-노후 및 부식 상태			
	-허용압력(압축기(재생기), 응축기, 증발기) 상태			
	-펌프(용액, 냉매, 진공) 상태			
	-연소장치 상태			
	-경보 상태			
	-안전장치(인터록) 상태			
	-과부하 차단 상태			
	-안전밸브 상태			
	-저·고수위 경보 상태			
	-배기가스온도			
	-냉동기에 연결된 헤더 상태			
	-에너지 사용량			
	-COP 상태			

[별표 3]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제11조제1항 관련)

점검항목	세부 검토사항
1.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1)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2)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 상태 3)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2. 성능개선 계획 수립	1) 기계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2)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3)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3. 에너지사용량 검토	1)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2)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설비 운용 방법

부적합	<미흡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 성 방 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조치필요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3. 현황사진에는 영 별표 7 제3호의 장비를 사용한 측정사진 및 측정데이터를 포함하여 첨부한다. 4. 전체 수량의 50% 이상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5. 압축식 냉동기, 흡수식 냉동기, 냉온수기, 공랭식 냉동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자료: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지 제3호서식]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이처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성능점검이 유지관리보다 강화된 점검 제도에 해당하는데,

현행법은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고시, 관리주체⁶⁾의 유지관리기준 준수)과 성능점검에 관한 사항(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보존·제출, 성능점검 업무의 대행)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6)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 현행법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비교 】

구분	유지관리	성능점검
법적근거	「기계설비법」 제16조, 제17조제1항	「기계설비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정의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
대상 건축물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7)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대상 기계설비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 1 (열원 및 냉난방 설비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 1 (열원 및 냉난방 설비 등)
시행주체	관리주체	관리주체
업무 정밀도, 주기 등	육안검사 및 상태 확인 수준 1년에 2회 이상 점검표 기록	성능점검(검사) 결과 보고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
점검결과	제출의무 없음	「기계설비법」 제17조 점검기록 보관, 요청 시 제출 의무
위탁 또는 대행	위탁 가능	대행 가능

※자료; 국토교통부

7)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② (생략)

개정안은 안 제16조 및 제17조의 제목을 각각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기계설비 성능점검’으로 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을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로 하며(안 제16조제2항),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중에서 성능점검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7조제1항), 시장등이 관리주체로부터 성능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시장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안 제17조제4항), 개선명령의 미이행 또는 이행 미보고의 경우에는 벌칙(안 제28조제1호의2) 또는 과태료(안 제30조제1항제3호의2)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현행법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요약) 】

현행		개정안	
제16조	[조 제목] 기계설비 <u>유지관리기준의 고시</u>	안 제16조	[조 제목] 기계설비 <u>유지관리</u>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유지관리 및 점검에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을 제정·고시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유지관리 및 <u>제17조에 따른 성능점검</u> 에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을 제정·고시
	<u><신 설></u>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하 “ <u>유지관리대상 건축물</u> ”)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 유지관리기준을 준수 ※현행법 제17조제1항에서 이동

현행		개정안	
제17조	[조 제목] 기계설비 <u>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u>	안 제17조	[조 제목] 기계설비 <u>성능점검</u>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 유지관리기준을 준수 ※개정안 제16조제2항으로 이동	(제1항)	<삭 제>
제2항 및 제3항	○관리주체: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	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신 설>	제3항 부터 제5항 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받은 점검 기록을 확인 결과 기계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개선명령 가능 ○개선명령을 받은 자: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개선명령 미이행: 벌칙 부과 －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 제28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개선명령 이행결과 미보고: 과태료 부과 - 500만원 이하 (안 제3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

이는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각각 별도의 조에 규정하여 두 제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의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주체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며,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시장등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성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능점검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성능점검 대상과 관련해서는 성능점검이 유지관리보다 점검 수준이 정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아닌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나.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2(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 용도 및 특성에 맞는 기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노후되거나 성능개선이 필요한 기계설비의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설치·유지관리 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 또는 노후 기계설비 개선 등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⁸⁾에 따르면, ‘기계설비’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등을 의미하는데,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적절하게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가 미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특성상 긴급 대피가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 있음.

개정안과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안전하고 적합한 기계설비 설치나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에서의 대형 안전사고 등을

8) 「기계설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은 기계설비의 범위를 1. 열원설비, 2. 냉난방설비, 3.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4.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5.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6. 우수배수설비, 7. 보온설비, 8. 덕트(duct)설비, 9. 자동제어설비, 10. 방음·방진·내진설비, 11. 플랜트설비, 12. 특수설비로 구분하고 있음.

방지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실내공기질관리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건강피해, 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취약할 수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또는 임산부 등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⁹⁾가 있음.

9)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소방관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는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보다 더욱 각별한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컨설팅 및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